

9.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304호 1999. 9. 18

개정이유

현재 5호 이상의 주택을 가져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2호 이상의 주택만 가지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.

주요골자

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5호에서 2호로 완화함.

주택회보